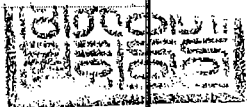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명	한글	조 덕 하	일본명	
	한자	趙 應 夏	이명	趙 德 夏
출생연월일	미상		사망연월일	미상
본적	미상			
주요경력	1904년 이전			
	1899.4.30	參尉 免官 (관보, 1899년 5월 8일)		
	1904년 ~ 1945년			
	1909.11.6	伊藤公頌德碑建議所 發起人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1909년 11월 6일)		
	1909.12.14	大韓商務組合本部 公社員 (국민신보, 1909년 12월 14일 2면)		
	1910.1.24	國民同志贊成會 幹事, 總務 (국민신보, 1910년 1월 25일 2면; 1910년 2월 19일 2면)		
1910.3.29	협성동진회(국민협성동진회) 발기인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9일 3면; 황성신문, 1910년 3월 29일 2면)			



##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 1) 국민동지찬성회에서의 합방청원활동 및 지위

▶ 『국민신보』, 1909년 12월 14일 2면, 「상무대단체찬성」.

“작일 상오 십이시에 대한상무조합본부에서 총대 楊楨, 尹泌 양씨를 일진회 본부에 파유하여 公函을 齎送하였는데 其 公函 전문이 如左하더라.

(중략) 항일 귀회 성명서가 一出後 국민의 성토가 四起이온바 敝部도 성명서에 대하여 不無疑點이러니 내외국신문에 喧籍한 소위 五條約을 得見하온즉 千萬古所無한 大變이라 귀회 성명서가 猶爲萬時라 謂하올지라 일반국민이 五條件을 必不聞知故로 以愛國熱誠으로 귀성명서를 성토나 然이나 소위 五條件을 聞知之日에는 必也齊賀于 (중략) 귀회와 同協하여 文明共進하기를 양축하오니 照亮하심을 敬要.

음희 3년 12월 13일

대한상무조합부장 이학재 (중략)

공사원 조덕하 (중략)

일진회장 이용구 각하”

▶ 『國民新報』, 1910년 1월 25일 2면, 「국민동지찬성회」.

“국내 摺紳章甫의 유지인사가 시국의 급박한 형세를 覘하여 정합방론을 찬성하여 내각과 통감부에 長書를 提呈함이 백여인에 達하얏슴은 己報하얏거니와 동지찬성자의 일치한 의견을 합동찬성함이 便宜하기로 爛商確議하여 동지제씨가 국민동지찬성회를 조직하고 신고서와 취지규칙을 해관 경찰서와 헌병사령부에 納呈하고 임시사무소는 북부 원동 9통 5호로 假定하고 작일 상오 2시에 발기총회를 開하얏는데 당일 입회원이 156인에 達하얏고 임원을 선정함이 如左하니

회장 이범찬, 부회장 서창보씨로 간사는 김사정, 이종춘, 조덕하 삼씨로 평의원은 박민규, 이병규, 김병훈, 홍성관, 손용우, 이선용, 권상규, 이종구, 이세중, 정인욱씨

등 10인을 우선 추천하고 평의원장은 박민규씨로 서기는 박병희, 이수봉 양씨로 추천하였다더라.”

▶ 『國民新報』, 1910년 1월 25일 3면, 「국민동지찬성회 취지서」.

“오호라 국가는 危如一髮하고 국민은 急如累卵한 이때에 국가의 국민된 의무로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전할 일대방침을 弁髦에 歸하여 邱墟溝壑의 前途危境을 越視奏瘠함이 인도상 의리가 墜地할 바라. 오직 우리 국민동포는 일제히 熱血을 瀝盡하여 국가안위와 국민존망을 己任으로 擔荷하고 一會를 조직하여 五大目的을 급급 이행하여 목하 胥溺을 以手援之기로 기도하여 오백년 국가종사를 공고하고 2천만 국민동포를 생활케 함이 國家幸甚 國民幸甚

음희 4년 1월 23일 (중략)

목적

일. 한일친선을 尤極敦睦함 (중략)

일. 정합방문제를 찬성함 (중략)

일. 임원을 如左함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3인, 의사원 30인, 서기 2인, 회계 1인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8일 2면, 「아귀가 또 장난한다」.

“국민동지찬성회에서 삼작일에는 한국 내각에 장서를 제정하고 재작일에는 일본 내각에 장서를 제정하였는데 다 합방문제를 실시하라는 취지라더라.”

▶ 『國民新報』, 1910년 2월 8일 3면, 「국민동지회 장서」.

“국민동지회에서 정부와 통감부에 장서를 提呈하였는데 그 전문이 아래와 같다  
더라

「통감부에 올리는 장서」

우리 양국이 정합방 계약을 완성하고 함께 문명정치의 범위로 나아간다면, 서로 싸우는 것이 반드시 그치고 원망하는 독기가 섞여서 사라지고 인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교류하는 정이 더욱 친밀하여 서로 부합하여 틈이 없어서 저들 열강이 그 사이를 엿볼 것을 기약하지 못하여 우리 동아의 황인종이 태산의 반석같이 안정된 자리에 영원히 자리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각하는 즉시 귀국정부에 알려

도모하여 실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략)”

▶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7일 1면, 「아귀지옥으로 잡아가들 적은 요망한 무리」.

“난신적자가 어느 때에 입사리오마는 대명천지 밝은 날에 머리를 흔들며 눈을 번득여서 조국산천을 들어다가 다른 나라에 합병코저 하는 난적배들은 오늘날에 처음으로 보았도다. (중략)

이 적은 요망한 무리들은 누구인가 서창보 이범찬 박문규 조덕하 김병훈 홍성관 최정규 이학재 김사정 이종춘 이병규 이규학 김현영 박병한 등이라. (중략)

오호라 이 무리들이 저희 구복을 위하여 조국을 팔아 먹고자 하며 동포를 팔아 먹고자 하는가 오호라 이 무리들이여 이 무리들의 죄는 아귀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도다 (후략)”

▶ 『국민신보』, 1910년 2월 15일 2면, 「兩會 懇親 盛況」.

“국민동지찬성회에서 일진회의 제창한 정합방을 찬성하기 위하여 동회를 조직함은 일반 知了하는 바인데 찬성회에서 발기하여 일진회와 간친회를 개최할 旨로 청유하여 재작일 하오 6시에 찬성회장 이범찬씨 이하 간부 의사원 60여명과 일진회 총무원 평의원 20여명이 명월관에 회동하였는데 찬성회 부회장 서창보씨가 식탁에 就하여 개회취지를 설명하였고 전 간사원 최정규씨가 일진회 축사를 진술하매 일진회 부회장 김택현씨가 답사하였고 본사장 최영년가 찬성회 축사를 진술하매 동회 총무 조덕하씨가 답사하였고 (후략)”

▶ 『국민신보』, 1910년 2월 19일 2면, 「동지회 총무 任」.

“재작일 하오 3시에 국민동지찬성회에서 평의회를 開하고 총무 조덕하씨 사면한 代에 김사정씨로 선정하였더라.”

▶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29일 3면, 「퇴각하겠지」.

“박문규 조덕하 등이 일진회 합방문제를 찬성할 취지로 국민협성동진회를 조직하고 회장은 전 판서 이정로씨로 총재는 전 영의정 민영규씨로 기타 임원은 상직현 이범석 이종한 이재극 이근명 제씨로 추천한 줄로 일전 국민신보에 게재하고

총대를 정하여 제씨에게 망첩을 보냈었는데 민영규씨는 그 사실을 듣고 놀랍고 의심나서 즉시 이정로씨에게 편지하여 그 이유를 질문하고 본인의 성명을 환수하라 하며 이씨가 답장하기를 본인도 회장의 임명을 담당한 바 없고 어떤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한 장의 망첩을 가지고 와서 두고 갔는데 곧 집 아해로 하여금 그 망첩을 퇴각하겠노라 하였더라.”

▶ 『황성신문』, 1910년 3월 29일 2면, 「망첩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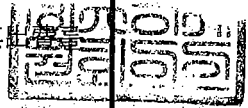
“조덕하 한창희 등이 조직한 협성진보회는 협성동진회라 개명하고 (중략) 제씨가 퇴각하였다더라”

#### 【참고사항】 伊藤博文에 대한 추도회 및 송덕비 건립 발기인 활동

- 출전: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안중근편 II), 憲機 제 2259호, 1909년 11월 24일.

“五. 이등박문에 대한 추도회 및 송덕비 건립 관계건

伊藤太師에 대한 송덕비 건의소 총무 이학재는 該所의 경비 及 예산금액을 십삼도의 부보상민에게 부담시켜 수집할 의도로 座商은 十錢 負商으로 부터는 五錢式을 납부시키기로 결정하고 기총예산액은 삼만원으로 내정하고 있었다 한다. 또 同所 役員중 조덕하 백성기 기타 이, 삼의 잡배는 경성 富人間을 권유하여 其不肯하는 자는 排日黨이라 하였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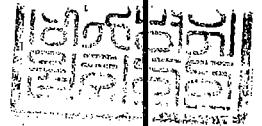
#### 관 란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합방청원을 내각과 통감부 등에 상주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조덕하는 이학재와 함께 대한상무조합본부의 합방찬성성명을 주도하였다. 또한 1910년 1월 24일 조덕하는 합방성명 찬성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범찬, 서창보 등과 함께 국민동지찬성회를 조직하고 간사와 총무를 맡았다. 국민동지찬성회는 일진회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이는 단체로써 일진회의 합방청원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급조된 단체에 가까웠다. 국민동지찬성회를 탈퇴한 뒤 3

월에 조덕하는 독자적으로 국민협성동진회를 조직한다고 선전하였다. 국민협성동진회는 전 판서, 영의정 등 원로의 참여로 사회의 이목을 끌었으나 조덕하 등이 사전에 협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이내 드러났다. 이 같은 조덕하의 행위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덕하는 1909년 10월 이토오[伊藤博文]가 죽었을 때 이토오의 추도회 및 송덕비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조덕하의 합방성명 찬성운동은 그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덕하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